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양식산업발전법」 제25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가 모든 양식업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25.8)임에 따라 면허 심사·평가제 주요 항목인 어장환경평가의 평가대상과 평가항목을 개정하는 한편,

품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품종별로 세분화된 어장환경평가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장환경평가 대상 및 평가항목 확대(안 제3조의2)

면허 심사·평가제가 모든 양식업을 대상으로 실시됨에 따라, 현재 어류가두리로 한정된 어장환경평가 대상을 모든 양식업으로 확대하고, 퇴적물 오염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평가 항목에 '총황'과 '중금속'을 추가함

나. 어장환경평가를 위한 어장출입 대상 확대(안 제13조)

어장환경평가 업무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위해 어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어장출입 증표 보유대상을 기존 어장환경조사 공무원에서 어장환경평가 공무원과 위탁받은 기관의 종사자로 확대

다. 품종별 어장환경평가 기준 마련(안 별표1)

어장환경평가를 어류 가두리에서 모든 양식업으로 확대 실시하기 위해
품종별 특성을 고려한 어장환경평가 기준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류를 양식하는 가두리양식업”을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양식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總有機)탄소량”을 “(總有機)탄소량, 총황, 중금속”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따른 어장환경조사 공무원의”를 “따른”으로 한다.

별표 1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양식 품종별 어장환경평가 평가 항목을 측정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가. 어류양식, 외해양식의 어장환경평가 항목 및 기준

< 총유기탄소량, 총황 >

점수 평가항목	0.5점	1점	1.5점	2점
총유기탄소량(TOC)	10.0미만	10.0 ~ 17.0	17.1 ~ 25.0	25.0초과
총황(TS)	2.7미만	2.7 ~ 4.1	4.2 ~ 5.5	5.5초과

< 저서동물지수 >

점수 평가항목	1점	2점	3점	4점
------------	----	----	----	----

저서동물지수	70초과	70 ~ 51	50 ~ 26	26미만
--------	------	---------	---------	------

나. 패류양식, 피낭류양식의 어장환경평가 항목 및 기준

< 총유기탄소량, 총황 >

점수 평가항목	0.5점	1점	1.5점	2점
총유기탄소량(TOC)	10.0미만	10.0 ~ 17.0	17.1 ~ 25.0	25.0초과
총황(TS)	2.4미만	2.4 ~ 3.3	3.4 ~ 4.6	4.6초과

< 저서동물지수 >

점수 평가항목	1점	2점	3점	4점
저서동물지수	70초과	70 ~ 51	50 ~ 26	26미만

다. 해조류양식의 어장환경평가 항목 및 기준

< 총유기탄소량, 총황 >

점수 평가항목	0.5점	1점	1.5점	2점
총유기탄소량(TOC)	7.7미만	7.7 ~ 10.3	10.4 ~ 18.2	18.2초과

< 저서동물지수 >

점수 평가항목	1점	2점	3점	4점
저서동물지수	70초과	70 ~ 51	50 ~ 26	26미만

라. 협동양식의 어장환경평가 항목 및 기준

< 저서동물지수 >

평가항목 \ 점수	1점	2점	3점	4점
저서동물지수	70초과	70 ~ 51	50 ~ 26	26미만

마. 복합양식은 개별 해당 품종 기준에 따른 결과의 평균값을 적용한다.

바. 어류등양식업에 포함된 그 외 품종은 어류양식업 기준을 적용한다.

2.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각 평가항목의 점수를 합하여 어장환경평가지수를 산정한다. 다만, 해저퇴적물의 중금속(비소, 카드뮴, 크롬, 구리, 수은, 납, 아연)이 한 종이라도 해양환경기준(해양수산부고시)의 주의기준(TEL)을 초과할 경우 1점을 추가 부여한다.(협동양식은 중금속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어장환경평가지수에 따라 어장환경평가 대상 어장의 등급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어류가두리양식, 외해양식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어장환경 평가지수	2.0~3.5점	4.0~5.5점	6.0~7.5점	8.0점 이상

나. 패류양식, 피낭류양식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어장환경 평가지수	2.0~3.5점	4.0~5.5점	6.0~7.5점	8.0점 이상

다. 해조류양식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어장환경 평가지수	2.0~3.0점	4.0~5.0점	6.0~7.0점	7.0점 이상

라. 협동양식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어장환경 평가지수	1점	2점	3점	4점

별표 1의 표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총유기탄소량 점수와 저서 동물지수”를 “각 평가항목의”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저퇴적물의 중금속(비소, 카드뮴, 크롬, 구리, 수은, 납, 아연)이 한 종이라도 해양환경기준(해양수산부고시)의 주의기준(TEL)을 초과할 경우 1점을 추가 부여한다.(협동양식은 중금속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1 제2호의 표를 삭제하고,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어장환경평가 대상 및 평가 항목 등) ① 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에 관한 평가(이하 “어장환경평가”라 한 다)의 대상은 <u>어류를 양식하는 가두리양식업</u> 어장으로 하고,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적물의 총유기(總有機)탄 소량 2. (생 락) ② ~ ⑥ (생 락)	제3조의2(어장환경평가 대상 및 평가 항목 등) ① ----- ----- ----- ----- 「양식산업발전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 호까지의 양식업 -----. 1. ----- (總有機)탄 소량, 총황, 중금속 2.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어장에의 출입통지) ① (생 락) ② 법 제23조제4항에 <u>따른 어장 환경조사 공무원의</u>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13조(어장에의 출입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u>따른</u> ----- ----- -----.